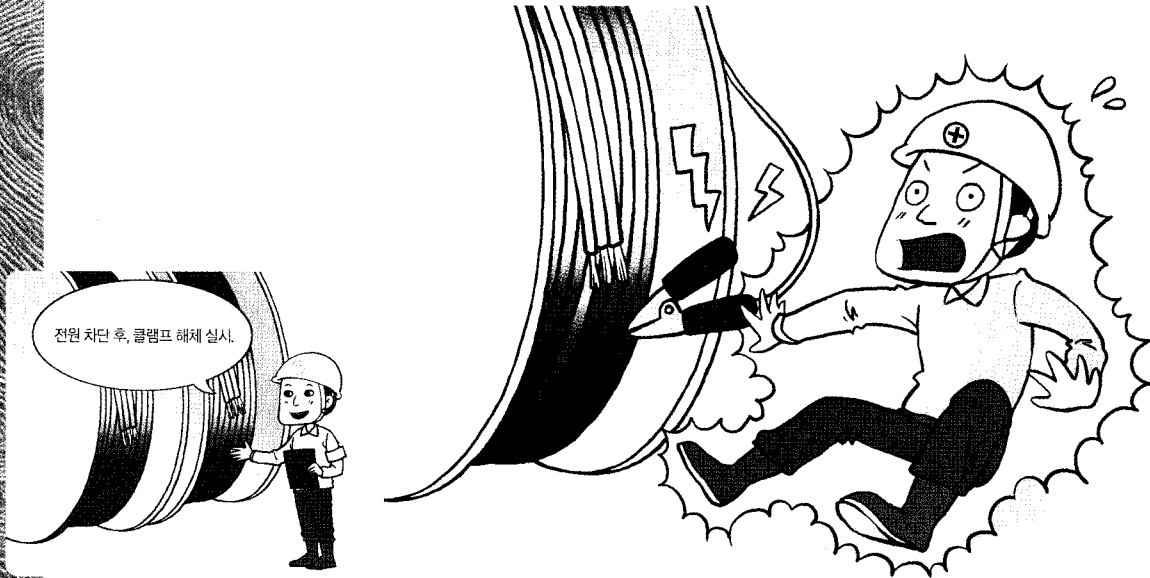


전력케이블 내전압시험 작업 중 클램프에 접촉하여 감전

*업종 : 절연전선 및 케이블제조 | 생산품 : 절연전선 | 기인물 : 케이블 클램프 | 재해유형 : 감전 | 피해정도 인적 사망 1명



1. 재해발생개요

전력케이블 내전압시험(21KV) 작업 중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로 전원 공급 측 케이블 클램프를 해제 하려다 피재자가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2. 재해발생과정

피재자가 특고압시험실 출입문을 폐쇄하고 2개의 전력케이블에 특고압시험장비를 사용하여 내전압시험을 시도하던 중 용량이 부족하여 전압이 10KV 이상 상승하지 않자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2개의 전력케이블 중 1개를 분리하고자 연결된 전원 공급 측 케이블 클램프를 오른손으로 해제하던 중 감전되어 사망

3.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가. 재해 발생원인

- (1)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 공급 측 케이블 클램

프 해제 실시

- (2) 케이블 클램프의 충전부 절연상태 미흡
- (3) 내전압시험 작업 시 단독작업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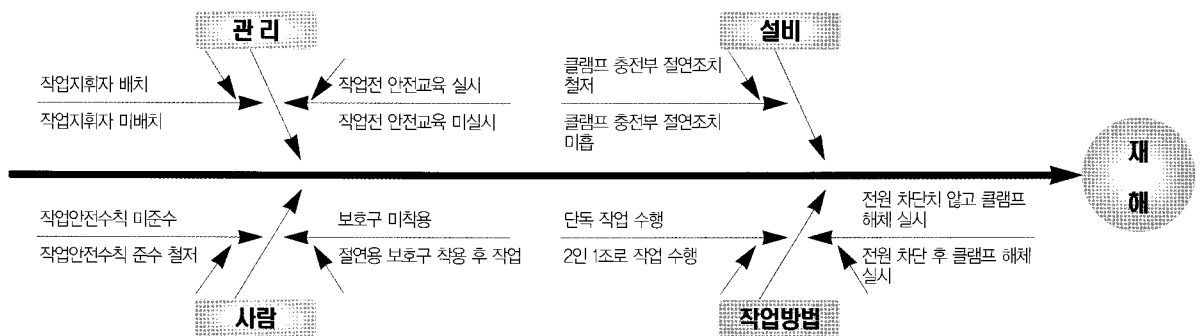
나. 예방대책

- (1) 작업책임자를 배치
- (2) 케이블 클램프의 충전부 절연테이핑 조치
- (3) 내전압시험 작업 시 2인1조로 작업 수행

4. 범위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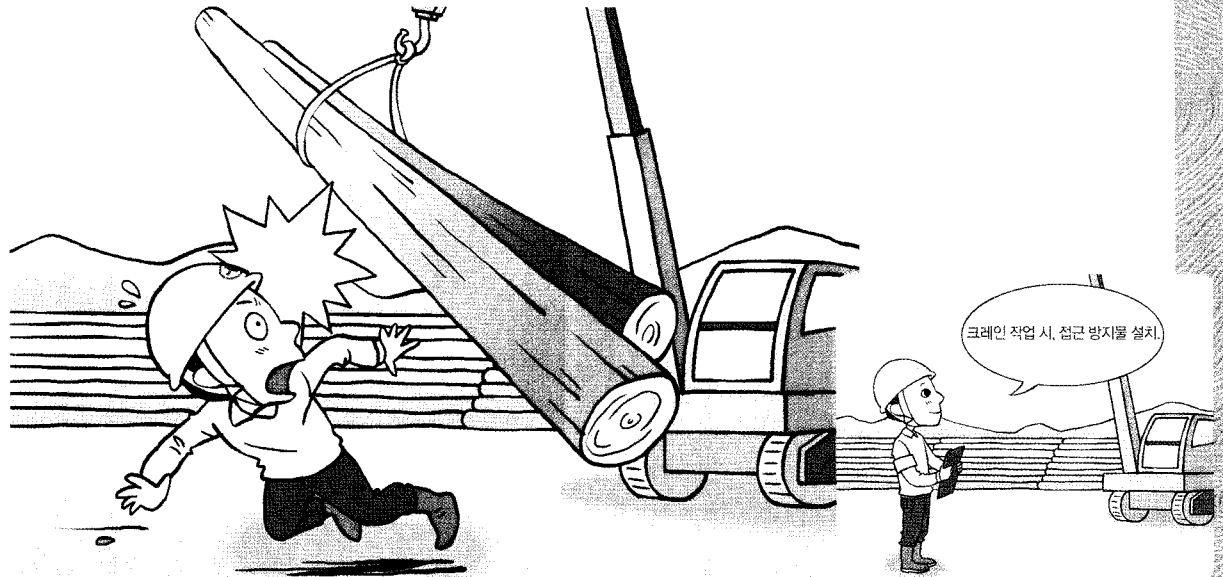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나.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 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원목 상차 작업 중 낙하

*업종 : 항만하역업 | 생산품 : 하역작업 | 기인물 : 원 목 | 재해유형 : 낙하 | 피해정도 인적 사망 1명



1. 재해발생개요

크롤러 크레인으로 원목을 차량에 상차 작업 중 운전교대 작업자가 핸드폰을 크레인에 놓고 와서 크레인에 접근하던 중 낙하되는 원목에 깔려 사망한 재해

- (1) 위험장소에 대한 접근
- (2) 작업중 이상 발견시 운전자와 신호유지 불량
- (3) 작업지휘자 미배치

2. 재해발생과정

선적 작업을 위하여 크롤러 크레인으로 트레일러에 상차작업 진행 중 피해자가 크레인 운전자와 교대 후 대기실로 돌아가던 중 휴대폰을 장비에 두고 온 사실을 인지하고 다시 크레인으로 돌아가던 중 교대 크레인 운전자가 트레일러에 상차 완료 후 장비의 원목 Grab에 1Pices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Boom을 스윙하자 Grab에 있던 원목이 피해자를 덮쳐 사망

나. 예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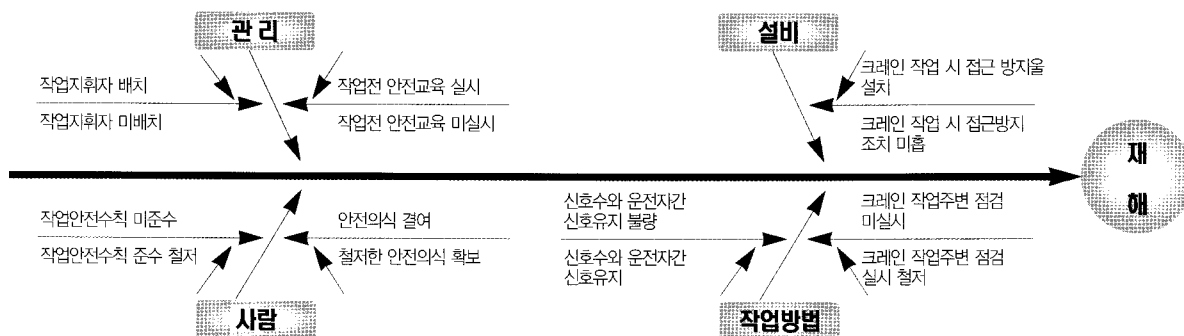
- (1) 위험장소에 대한 접근 금지
- (2) 작업중 이상 발견시 신호수와 운전자간 신호유지
- (3) 작업지휘자 배치 후 작업

3.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가. 재해 발생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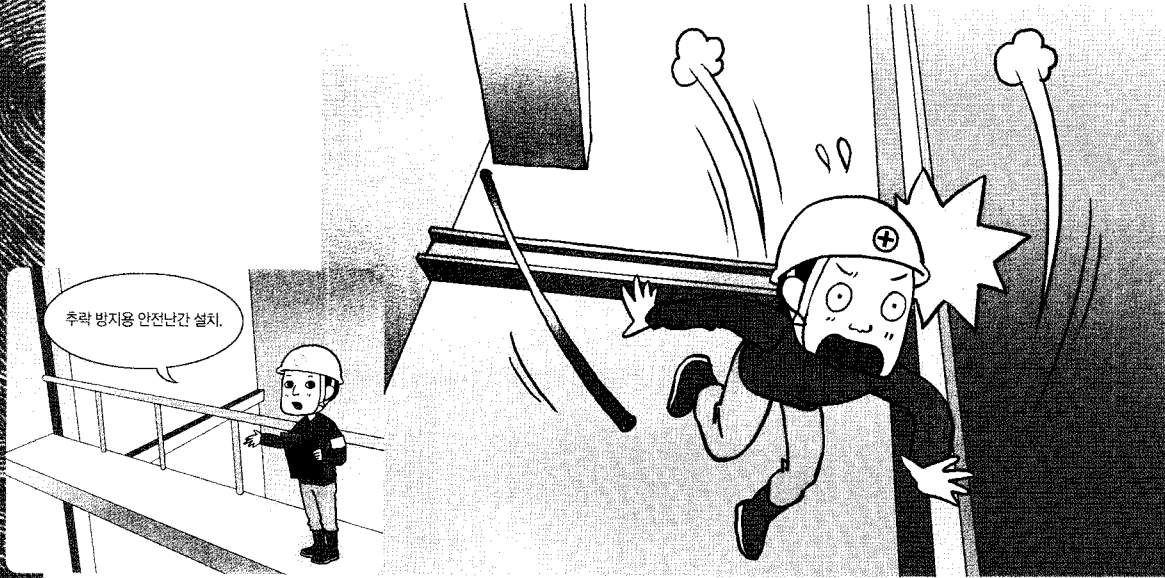
4. 범위반사항

-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나.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 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갱내에서 추락

*업종 : 금속광업 | 생산품 : 철광석 | 기인물 : H빔 | 재해유형 : 추락 | 피해정도 인적 사망 1명



1. 재해발생개요

철광석을 캐는 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갱내에서 H빔 위에 올라가 괴강을 밀다 미끄러져 추락, H빔에 가슴이 강타되어 급히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심장마비로 사망한 재해

2. 재해발생과정

갱내에서 작업 중이던 피재자가 괴강이 걸려 움직이지 않자 H빔 위에 올라가 자칫대로 괴강을 미는 도중 갑자기 중심을 잃고 추락, 가슴을 H빔에 부딪치며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였으나 심장마비로 사망

3.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가. 재해 발생원인

- (1) 갱내 작업시 안전대 미착용
- (2)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대 미설치

- (3) 안전작업수칙 미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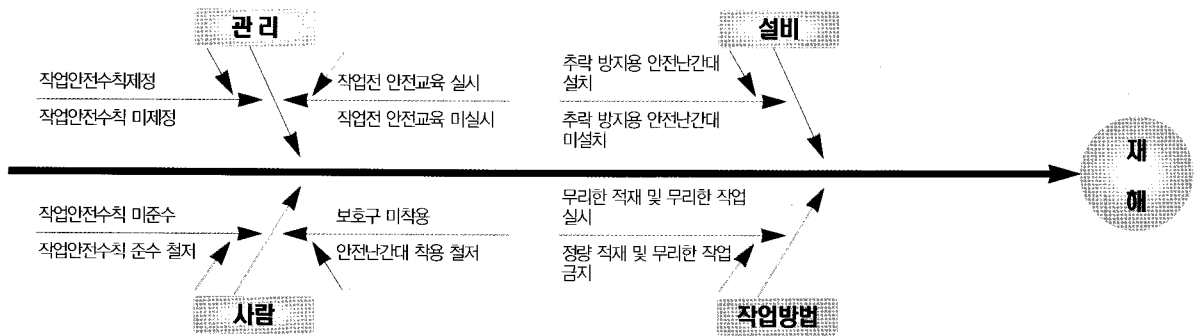
나. 예방대책

- (1) 갱내 작업시 안전대 착용
- (2)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대 설치
- (3) 안전작업수칙 제정 및 교육

4. 범위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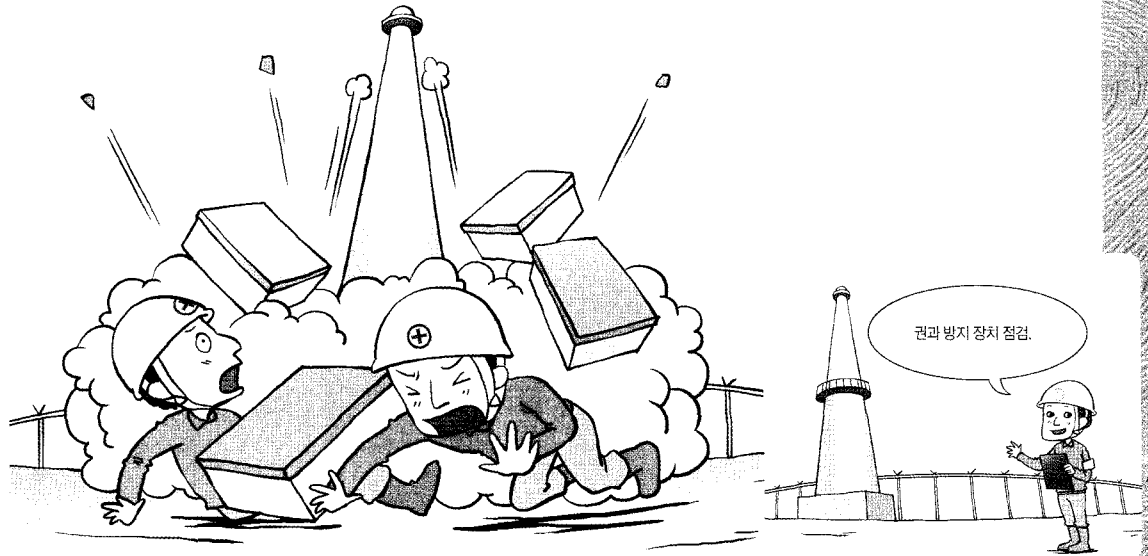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나.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조명탑등기구 점검중 낙하

*업종: 건설업 | 생산품: | 기인물: 조명탑 | 재해유형: 낙하 | 피해정도 인적 사망 1명, 부상 1명



1. 재해발생개요

항공기 정비고 전면 조명탑의 승하강식 조명등기구를 점검하기 위해 조명탑 하부에서 작업을 하던 중, 조명등기구가 낙하하여 피재자를 강타,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재해

- (1) 권과방지장치 점검 미흡
- (2) 비상정지장치 점검 미흡
- (3) 와이어로프 안전계수 미준수

2. 재해발생과정

조명탑조도와 설정각도측정 및 승강기 테스트 등을 실시하던 중 조명탑(25m)의 구조물을 하강시키기 위해 리모콘을 조작하여 구조물을 고정장치에서 해제하려 하였으나 작동하지 않자, 피재자가 수동조작으로 콘트롤 박스의 마그네트 수동조작레버를 상승 방향으로 작동하던 중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구조물이 25m 아래로 낙하되어 피재자들을 강타,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

나. 예방대책

- (1) 권과방지장치 점검 철저
- (2) 비상정지장치 점검 철저
- (3) 와이어로프 안전계수 준수 철저

3.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가. 재해 발생원인

4. 범위반사항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나.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